

 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
	배포일시	2020. 8. 26(수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부동산산업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한정희, 사무관 심재문, 사무관 주광돈 • ☎ (044) 201-3415, 341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는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.

< 머니투데이, '20.8.26.(수) >

- ◆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개업소들이 최근 일제히 온라인 매물 내려.
 - 허위매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항의하는 차원의 보이콧
 - 허위매물 뿐 아니라 실제매물까지 모두 내려 실수요자들이 제때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 표시·광고를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적발하여 공인중개사법*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계획입니다.

* 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(제33조제1항제8호), ② 정당한 사유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·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(제33조제2항제4호)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

-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서울·경기지역에서 진행 중인 현장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담합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.

- 지난 8월21부터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에 관한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개정된

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,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교육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.

- 또한,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개정법령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모니터링 기관인 ‘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’의 콜센터(02-6951-1375, www.budongsanwatch.kr)를 통해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심재문 사무관(☎ 044-201-34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